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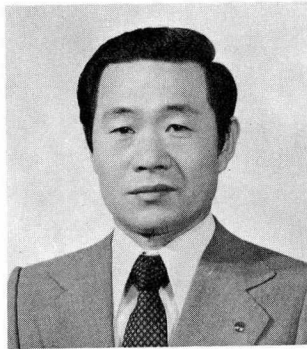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개선 필요

경제현상은 경제사실을 바탕으로 내외의 영향에 의하여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규칙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주변환경의 여건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성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현상중의 하나인 보험도 동태적인 상황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면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보험목표의 달성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많은 문제를 胚胎하여 왔으며 이것들을 도출하여 해소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사안에 따른 장단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오늘날과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업적은 하루 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험업계 스스로가 문제개선을 위해 경영 의지에 따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보험감독당국이 당면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검토하여 마련한 현실적인 지도정책을 추진한 결과 얻은 결실로 보험업계와 보험감독당국이 상호협동하는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와같은 협조성장을 지속한 곳에는 업계의 역량과 행정의 제창이 서로 맞아서 경쟁원리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산업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생성된 새



최 병 수
(한국보험공사·부사장)

로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당면한 현실문제를 현재의 제반보험 여건에 비추어 검토하고 발전을 위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대 60년대 이후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도의 양적성장을 이룩하여 제3차 산업의 하나로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성장 이면에는 보험인수기법의 담보상태, 보험서비스 결여로 보험가입자의 불만과 분쟁의 증대, 모집질서의 문란과 모집조직의 미정착, 각종의 보험협정과 행정규제로 인한 자율기능 저하와 타율성 증대 등으로 자구적 노력에 의한 경영내실을 다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으로 경제규모가 거대화·다양화됨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 대해 관 주도 통제방식에 의한 경제운용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개별산업을 한결같이 보호 육성하는 정책은 오히려 기업체질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험 산업도 정부의 경제운용정책 방향전환에 따라 정부당국의 지나친 보호감독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66
**내실있는 보험경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위험인수 기능을
 정착시키고 위험인수 기법을
 항상 발전시켜야 한다.**
 99

보험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고소득사회가 실현되어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새로운 보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권리의식 팽대로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을 중핵으로 한 이론적 분석적인 consumerism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보험산업 등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이 급격하게 가속되어 오고 있다.

우리 손해보험시장에는 이미 외국사가 진출하여 시장활동에 참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미개방상태인 생명보험분야에 대하여도 새로이 시장개방이 요구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국제수지에 연계하여 부득이 미국계 1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국내시장에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환경과 업계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험제도 개선과 체제정비에 나설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바 손해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율경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관한 각종규제지침을 정비하고, 일부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약관 및 요율의 인가절차를 간소화시키며 나아가 해상적하보험 등의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또는 지침을 정비하거나 내규화하도록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보험경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보험의 주된 기능은 손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손해를 피보험자 단체의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것이어서 보험자로서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대한 이익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Mark R.Green의 지적처럼 방재는 보험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내실있는 보험경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위험인수기능을 정착시키고 위험인수기법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보상

의 적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보험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자율폭을 확대시키고 사업비 절감 등의 자구적 노력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모집조직의 정착육성을 위해 직급계약을 점진적으로 제한시키고 가계성 보험의 모집은 모집인 및 대리점에서 전담하게 하여 대리점의 분업화를 유도하며 보험중사 임직원의 질적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비 투자를 점차 확대 실시할 것이다. 또한 국내 재보험거래는 연차적으로 의무출재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1990년도에는 완전 자율화시켜 원·재 보험자 상호간에 시장협정(market agreement)에 따라 재보험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험가입자측면에서 보험약관을 정비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네째로 손해보험산업은 이미 대외시장 개방이 되어 있으므로 기존 국내진출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pool 참여 이외의 추가 진출은 당분간 허용됨이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해외로 진출하여 영업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로 위에 언급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정책과 감독기능의 기본방향설정과 집행에 중점을 두고 사전적인 직접감독보다 사후적 지도에 치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보험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보험산업발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바 그 동안 우리 보험업계는 감독당국의 제도적인 선단행정의 틀에서 성장된 면이 적지 않았으므로 보험발전계획의 실시에 따른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보이는 듯하나 시행상의 급격한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내용에 따라 준비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과거에도 많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보험산업을 성장발전시켜 온 우리의 저력이 견재하였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고 끈기있는 노력에 의해 이를 만족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 ☐